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52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 의 자 : 한준호 · 이연희 · 임미애
강준현 · 조계원 · 김 윤
김기표 · 차지호 · 김태선
최혁진 · 전현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불거져 왔음.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방송의 경우 지역간 · 세대간 · 계층간 ·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 의무와 공정성, 공익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8.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제3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각 분야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분야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 그 밖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제50조제2항 전단 중 “理事會의”를 “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 및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제3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단서 신설> 1. ~ 7. (생략) <신설>	제13조(결격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이니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u><신 설></u>	9.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u><신 설></u>	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 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 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u><신 설></u>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 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u><신 설></u>	④ 제3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 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理事는 <u>각 분야의 대표성을</u>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u><신 설></u>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u> <u>각 분야의-----</u>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 통신공학 그 밖에 방송・언론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 ~ ⑨ (생 략) 第50條(執行機關) ① (생 략) ② 社長은 <u>理事會의</u>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 ⑥ (생 략)	<u>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2. <u>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3. <u>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u> ④ ~ ⑨ (현행과 같음) 第50條(執行機關)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u>-----. -----. ③ ~ ⑥ (현행과 같음)
---	---